

[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]에 따라 본인부담금 변경안내

요양시설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(2024년 01월 01일 기준)

노인 장기요양 기관(요양시설) 기본수가

등급	1일 수가	일수	일반수급자	경감대상자(40%)	경감대상자(60%)
			본인부담금 20%	본인부담금 12%	본인부담금 8%
1등급	84,240	30일	505,440원	303,260원	202,170원
		31일	522,280원	313,370원	208,910원
2등급	78,150	30일	468,900원	281,340원	187,560원
		31일	484,530원	290,710원	193,810원
3-5등급	73,800	30일	442,800원	265,680원	177,120원
		31일	457,560원	274,530원	183,020원
본인 부담금 내역		기초수급자	0% 부담		
		경감60%	8% 부담		
		경감40%	12% 부담		
		일반	20% 부담		

※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이 2023년대비 평균 3,04% 인상

계약의사 진료비용

	일반 수급자	경감(12%) 수급자	경감(8%) 수급자	기초수급자
초진	3,520원	2,110원	1,400원	0원
재진	2,510원	1,510원	1,000원	0원

-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시설급여는 20% 본인이 부담한다.
- 단,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(12%),(8%)
국민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.

라파엘의집